학생성적평가위원회규정 5-1-38

규정번호 5-1-38
제정일자 2018.12.10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2차 개정
관리부서 학사지원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성적평가 업무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학생성적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성적평가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
2. 성적분포 비율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
3.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따른 기 인정 성적의 취소
4. <삭제(2023.09.25.)>
5. 우리대학 이외의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에 관한 사항
6. 기타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(개정 2024.7.24.)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(개정 2024.7.24.)

제5조(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6조(의결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제4호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2항, 제4조제2항)